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7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05나18742 손해배상(자)

원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1. 남

2. 남

원고들 주소 성남시 중원구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진국

피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주식회사

서울 중구

대표이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

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. 1. 19. 선고 2002가단1603 판결

변 론 종 결 2007. 9. 5.

판 결 선 고 2007. 11. 7.

주 문

1.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○○○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 - 가. 피고는 원고 ○○○에게 623,421,351원, 원고 ○○○에게 5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. 1. 21.부터 2007. 11. 7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 - 나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2. 소송총비용 중 50%는 원고들이, 나머지 50%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3. 제1의 가.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, 원고 ○○○에게 1,177,755,083원, 원고 ○○○에게 1,0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. 1. 21.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, 원고 ○○○가 기대여명기간인 2034. 4. 20. 이후 생존하는 동안 위 원고에게 매월 21일에 1,416,60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(원고 ○○○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가. 원고들의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.

나. 피고의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○○○에게 82,933,281원, 원고 ○○○에게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폐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이 유

1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가. 책임의 근거

(1) 인정 사실

(가) ○○○는 2000. 1. 21. 04:40경 혈중알콜농도 0.21%의 주취상태에서 ○○○ 소유인 경기 45다6625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○○○ 앞 도로상을 이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조향 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대 조작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아,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○○○로 하여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.

(나) 피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서 ○○○와, ○○○가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.

(다) 원고 ○○○는 원고 ○○○의 아버지이다.

[증거] 갑 1, 2, 3, 6, 7, 1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(2)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사고는 ○○○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 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, 피고는

위 승용차에 대한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나. 책임의 제한

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, 원고 ○○○는 2000. 1. 20. 저녁에 ○○○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○○○를 처음 만나 같이 논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○○○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, ○○○가 위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원고 ○○○와 ○○○는 모두 술에 만취해 있었던 사실, 원고 ○○○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그렇다면 원고 ○○○가,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는 ○○○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이러한 원고 ○○○의 과실에, ○○○가 호의로 위 원고를 동승시킨 점까지 참작하여 ○○○의 과실을 60%로 제한한다.

2. 손해배상의 범위

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.

가. 노동능력상실률

신경외과 52% 영구장해

이비인후과 20% 영구장해

안과 48% 영구장해

나. 소득

원고 ○○○는, 자신은 간호조무사이므로 보건의료전문가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일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, 간호조무사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

의 보건의료전문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,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.

다. 개호비

원고 ○○○에게는 운동장애, 실인증, 실행증이 합병되어 있고, 뇌의 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가 있으며, 치매 및 정서장애, 간질발작까지 합병되어 있어, 혼자 둘 경우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도 있으므로, 하루 중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[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5호증의 1, 2, 갑 17호증, 을 4호증, 제1심 법원의 ○○○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및 이 법원의 ○○대학교 ○○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, 이 법원의 위 ○○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3. 결론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○○○에게 623,421,351원, 원고 ○○○에게 5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0. 1. 21.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. 11. 7.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,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○○○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완주 _____

판사 김한성 _____

판사 손병준 _____